2015년 엔지니어링SW 활용지원 사업 공고

국산 엔지니어링SW를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 및 제품 개발을 위한『2015년 엔지니어링SW 활용지원 사업』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15. 7. 29.

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

1. 사업 목적 및 개요

○ 국산 엔지니어링SW를 활용한 연관 제조기업의 기획·설계 분야 기술역량 고도화 지원

> ※ **엔지니어링SW**는 컴퓨터 **시뮬레이션** 기법으로 제품의 **디자인(설계), 성능해석, 검증**을 하는 **공학SW**
>
> * 실제 제품제작 등을 거치지 않고도 가상공간에서 물건을 만들고 구동까지 함으로서 제품설계 및 품질의 최적화를 구현

○ 국산 엔지니어링SW 활용지원 사업은 총 2개 사업, 단기컨설팅형과 전주기지원형으로 구분하여 구성

- **(단기컨설팅형)**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엔지니어링SW를 활용하여 원가 절감, 공정개선, 성능개선을 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

- **(전주기지원형)** 신규 개발을 목표로 엔지니어링SW를 활용하여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하고자 하는 중소·중견 기업 지원

< '15년도 엔지니어링SW 활용지원사업 총괄표 >

구분	지원유형	지원기간	선정규모	접수 및 평가	평가방법
활용지원	① 단기컨설팅형	5개월 이내	8개 내외	8~9월	서면평가
	② 전주기지원형	10개월 이내	3개 내외	8~9월	발표평가

1. 단기컨설팅형 : 엔지니어링SW 활용지원

1 신청자격

○ **(신청자격)** 엔지니어링SW를 활용하여 제품의 성능 향상 및 공정 개선을 하고자 하는 기업

-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0억 미만의 중소기업
  * 뿌리산업 및 50인 이하 소기업은 추가 가점 부여

2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

○ **(지원기간)** 2015년 9월 ~ 2016년 1월(5개월)

○ **(지원규모)** 과제당 3천만원 이내로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

○ **(지원조건)** 기술컨설팅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국산 엔지니어링SW를 활용한 컨설팅기업(기관)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

  *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컨설팅기관으로 참여불가(관련규정 :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10조 7항, 첨부파일 참조)

3 지원내용

○ 엔지니어링SW를 활용하여 제품의 성능 및 공정개선 등 지원

- 기존 제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엔지니어링SW 활용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지원

< 단기컨설팅형 과제 지원계획 >

지원내용		사업주체	지원내용
	단기 컨설팅	주관기업 (제조기업)	5개월 이내, 3천만원 이내 지원 애로기술 해석컨설팅 제공

4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

○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·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.0% 이하이고,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20% 이상

5 선정 절차 및 평가 기준

□ 선정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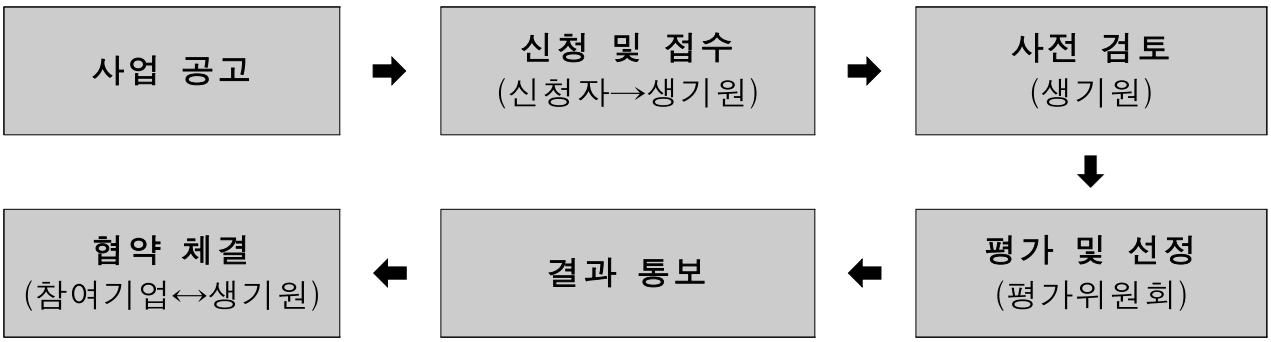

* 선정 평가 시, 서면평가로 진행

○ **(평가기준)** 평가는 지원필요성, 사업성 및 기대효과, 사업비 구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로 진행

평가항목	세부 항목	배점
지원 필요성	· 당면한 애로사항의 시급성 · 정부지원의 타당성	40
사업성 및 기대효과	· 상용화 가능성 및 사업성 · 성과 달성 시 경쟁제품 대비 우수성 · 지속적 활용 계획의 타당성	50
사업비	· 사업비 구성의 적합성	10
가점	· 뿌리산업 및 50인 이하 소기업(5점) · 기타 우대 사항(3점)	8

□ 기타 우대 사항

○ 최근 3년 이내(접수 마감일 기준)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“혁신성과”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(2점)

○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(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% 이상인 경우,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% 이상인 경우)(1점)

6 신청 요령

□ 제출서류

서 류 명	원본/사본	부수	비고
사업계획서	원본	1부	
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	사본	각 1부	
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원본	각 1부	
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	원본	각 1부	
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	원본 또는 사본 *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	각 1부	최근 2년 자료 (2013년, 2014년)
우대사항 증빙서류	사본	각 1부	
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증빙서류	사본	각 1부	

□ **접수기간** : 2015. 7. 29.(수) ~ 8. 28.(금) 18:00까지

□ **접수방법** : 이메일(파일) 및 우편(원본)

※ 제출서류 원본(1부)은 우편 제출 하며, 작성된 파일은 이메일 제출하여함

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□ **신청서 교부** : 신청서 양식 및 관련 규정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

※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(http://www.kitech.re.kr) 내 공지사항 참조

7 관련 규정

○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

<부속요령>

·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

·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

·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·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

○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

8 접수 및 문의처

□ **담당자 연락처**

○ 담당자 : 황재업 연구원

○ 연락처

- 전 화 : 031-8040-6758
- 팩 스 : 031-8040-6760
- 이메일 : ts3000@kitech.re.kr

○ 주 소 : (426-910)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
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복합동 205호

2. 전주기지원형 : 엔지니어링SW 활용지원

1 신청자격

○ **(신청자격)** 엔지니어링SW를 활용하여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하고자 하는 중소·중견 기업

- 단순 부품이 아닌 모듈 형태로 판매가 가능한 제품 개발 수행
- 주관기업 내 개발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구매 조건부(협약 후 6개월 이내 활용SW 구매) 지원 시 가점 부여

2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

○ **(지원기간)** 2015년 9월 ~ 2016년 5월(9개월)

○ **(지원규모)** 과제당 1억원 이내로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

○ **(신청조건)** 제품의 성능 개선이 아닌 신규 제품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제품에 대한 사업계획서*를 제출하여야 함

* 제품의 시장분석, 마케팅 전략 등을 검토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서술

- 시제품 제작 및 시험검증을 지원기업 또는 컨설팅기업(기관)이 직접 수행하거나 의뢰하여 수행

* 시제품 시험결과 데이터를 컨설팅기업(기관)과 공유하여야 함

*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컨설팅기관으로 참여불가(관련규정 :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10조 7항, 첨부파일 참조)

- 신청기업은 1명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엔지니어링SW 교육을 실시

3 지원내용

○ **(주요내용)** 주관기업이 제품 아이디어 및 기본·개념설계를 제공하고 전문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설계·해석·시제품 개발

- 제품의 기본 설계에서부터 해석, 시험검증을 통한 제품 개발의 전주기적 과정을 지원
- 개발 제품의 특성에 따라 1개 또는 다수의 엔지니어링 컨설팅 기업과 협력 지원

< 전주기지원형 과제 지원계획 >

수행기관		지원내용	사업비
	설계	- 신제품 아이디어를 성능해석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3차원 모델링	20%
	성능해석	- 엔지니어링SW를 활용한 제품 성능해석	40%
	시험검증	- 제품의 성능평가를 위해 시제품 제작 - 성능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시험 검증	40%

4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

○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·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.0% 이하이고,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% 이상

○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·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·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

참여기업수	참여기업[1] 유형 및 구성	정부출연금 지원비율	민간부담금 현금비율
1개	중소기업[2] 또는 중견기업[3]	연도별 사업비의 75.0% 이하	연도별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의 10% 이상
	대기업[4]	연도별 사업비의 50.0% 이하	연도별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의 20% 이상
2개 이상	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/3 이상	연도별 사업비의 75.0% 이하	연도별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의 10% 이상
	그 밖의 경우	연도별 사업비의 50.0% 이하	연도별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의 20% 이상

1) '참여기업'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,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
2) '중소기업'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에 따른 기업임
3) '중견기업'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
4) '대기업'이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

5 선정 절차 및 평가 기준

□ 선정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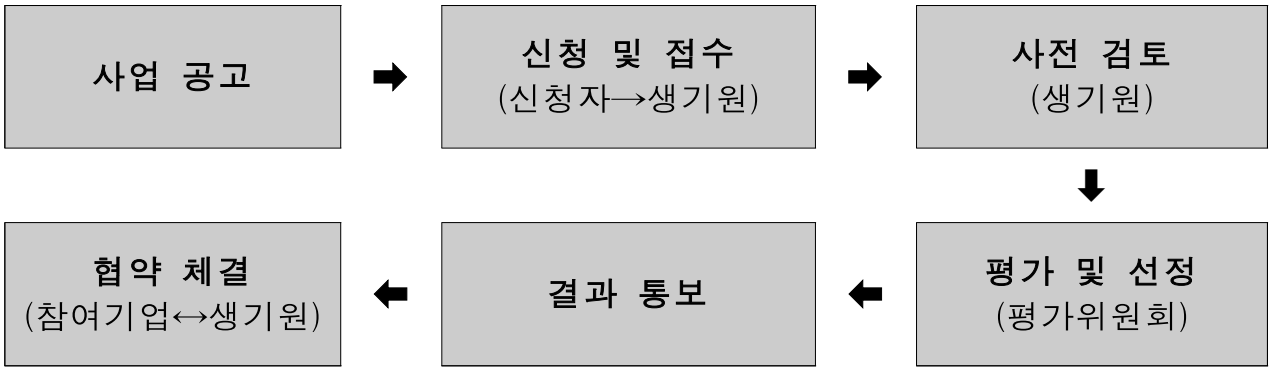

* 선정 평가 시, 발표평가로 진행

○ **(평가기준)** 평가는 사업수행능력, 사업계획,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사업 책임자 발표평가로 진행

평가항목	세부 항목	배점
사업수행 능력	·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의 기술역량 · 연구개발 수행 경험 · 신청기업의 재무적 안정성	25
사업계획의 우수성	· 개발계획의 타당성 ·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·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	20
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	· 상용화 가능성 및 사업성 ·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·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	45
사업비	· 사업비 구성의 적합성	10
가점	· 해당 SW 구매조건부 지원 시(5점) · 기타 우대 사항(3점)	8

□ 기타 우대 사항

○ 최근 3년 이내(접수 마감일 기준)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 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“혁신성과”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(2점)

○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(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% 이상인 경우,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% 이상인 경우)(1점)

6 신청 요령

□ 제출서류

서 류 명	원본/사본	부수	비고
사업계획서	원본	1부	
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	사본	각 1부	
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원본	각 1부	
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원본	각 1부	
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	원본	각 1부	
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	원본 또는 사본 *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	각 1부	최근 2년 자료 (2013년, 2014년)
우대사항 증빙서류	사본	각 1부	
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증빙서류	사본	각 1부	

□ **접수기간** : 2015. 7. 29.(수) ~ 8. 28.(금) 18:00까지

□ **접수방법** : 이메일(파일) 및 우편(원본)

※ 제출서류 원본(1부)은 우편 제출 하며, 작성된 파일은 이메일 제출하여함

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□ **신청서 교부** : 신청서 양식 및 관련 규정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

※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(http://www.kitech.re.kr) 내 공지사항 참조

7 관련 규정

○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

<부속요령>

·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

·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

·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·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

○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

8 접수 및 문의처

□ **담당자 연락처**

○ 담당자 : 황재업 연구원

○ 연락처

- 전 화 : 031-8040-6758
- 팩 스 : 031-8040-6760
- 이메일 : ts3000@kitech.re.kr

○ 주 소 : (426-910)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
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복합동 205호